

수 원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0685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0	작성 일자	2026. 3. 1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명애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17. 11. 16. 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4. 12. 6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성시현	302호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인	2019.11.10.	63,000,000		2019.11.8.	2019.10.18.		
	302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19.11.08.			
	302호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9.11.10.~ 2023.11.9.	63,000,000		2019.11.8.	2019.10.18.	2024.10.24.	
<p><비고> 성시현: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.12.24.임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0685

[물건 10]

10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07-12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-2

철근콘크리트구조 스톱지붕 5층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

1층 73.13㎡

2층 213.65㎡

3층 213.65㎡

4층 123.44㎡

5층 83.15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18.3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07-12
대 493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493분의 17.64

감정평가액

95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4.29	95,000,000	9,500,000
2회	2026.06.08	66,500,000	6,650,000
3회	2026.07.13	46,550,000	4,655,000
4회	2026.08.25	32,585,000	3,258,500